

「2026년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공모」

『2026년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22일

교육부 장관 최고진

1. 공모 개요

- 지원 목적 : 소외지역(읍·면·특수지역) 등 초등학생의 방학 중 교육기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운영 우수모델 발굴·확산
- 지원 대상 : 시·군·구청 - 교육지원청 컨소시엄
 - ※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에서 참여 학교와 모델 등을 선정·확정하여 신청
 - ※ 세종·제주의 경우,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닌 '광역' 단위로 신청(시·도청 - 교육청 컨소시엄)
- 예산 규모 : 총 135억원(특별교부금)
- 선정 규모 : 20개 내외 기초지자체를 권역별로 선정

수도·강원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호남·제주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계
5개 내외	6개 내외	5개 내외	4개 내외	20개 내외

※ 평가 결과에 따라 권역별 선정 수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 지역이 신청 시 가점을 부여

- 지원 내용 : 각 지역이 희망하는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구체화 하고 연중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 학교당 40백만원 내외 지원

* '26학년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모델 운영을 의미

2. 지원 대상 및 방식

- 지원 대상 : 시·군·구청 - 교육지원청 권소사업
- 지원 방식 : 방학 중 특색 돌봄·교육모델 운영을 희망하여 지원을 신청한 기초지자체 중 대상을 선정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
 - ‘기초지자체’ 단위(교육지원청 단위 아님)로 신청 및 선정하며, 관내에 읍·면·특수지 학교(이하 ‘대상 학교’)가 있는 기초지자체가 신청 가능
 - 각 기초지자체가 대상 학교 중 참여 학교*를 모집하여 신청하고, 20개 내외 기초지자체 선정하여 교당 4천만원 내외 지원** (약 340교)
 - * 기초지자체가 직접 학생을 모집하여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참여 학교인지 여부는 해당 학교 학생에게 지원이 이루어 지는지, 이를 위해 학교가 실질적으로 협조하는지에 따라 판단
 - ** 선정 기초지자체별로 참여 학교 수에 비례하여 평균 6.8억원 지원하며, 최종 선정 학교 수와 단수 조정 등을 고려하여 교당 지원액 일부 변동(단수 조정을 위한 일부 차등 포함) 가능
 - 관내에 ‘대상 학교’ 수가 부족한 서울·광주·대전은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 및 학교의 기준을 시·도청,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기초지자체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지자체당 참여 학교 수는 ‘10교’로 제한

3. 선정 계획

- 선정 규모 : 20개 내외 기초지자체를 권역별로 선정

수도·강원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호남·제주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계
5개 내외	6개 내외	5개 내외	4개 내외	20개 내외

※ 평가 결과에 따라 권역별 선정 수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절차 :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로 운영 계획을 제출하고, 광역지자체가 1차 심사를 거쳐 교육부에 추천할 기초지자체를 제출하면, 교육부가 최종 심사를 실시 후 지원 대상 선정
 - (신청·제출) 기초지자체(권소사업)가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기초지자체의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심의 후 관할 광역 지자체로 신청
 - * 사군구청이 주관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경우 모두 가능(세종제주는 시도청 또는 교육청 주관)
 - ※ 세종·제주는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지자체 ‘초등돌봄·교육협의체’에서 심의

- (1차 심사) 광역지자체가 자체 심사 기준·절차(중앙 단위 선정 기준·절차 참고)와 아래의 추천 기초지자체 수 상한 기준에 따라 추천할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고, 광역지자체의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심의 후 교육부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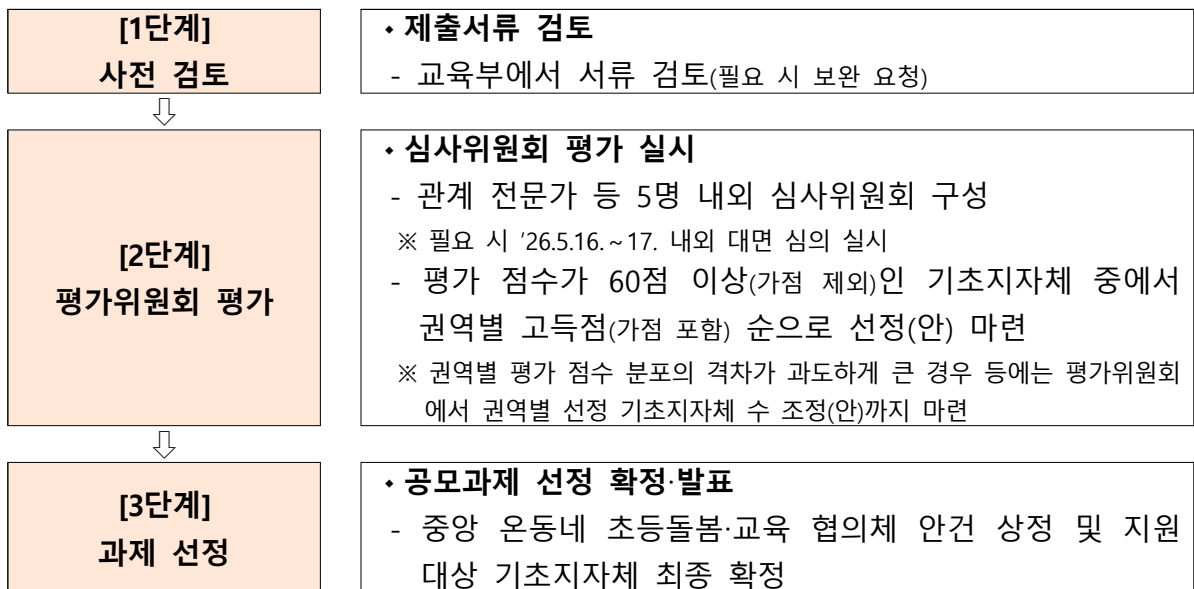
※ 세종·제주는 신청·제출 시 광역지자체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심의를 거치므로 1차 심사 생략

< 광역지자체별 추천 가능 기초지자체 수 상한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도 지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참여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의 수가 많으므로, 참여 가능 기초지자체 수의 50% 범위 내에서 추천 ※ 예시: 경기, 관내에 대상 학교가 있는 기초 지자체 15개 → 최대 7개 기초지자체(47%)까지 추천 가능 - 일반 시 지역(부산, 대구, 인천, 울산): 참여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의 수가 적으므로, 참여 가능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추천 가/부만 결정하여 추천 - 대상 학교 수 부족 지역(서울, 광주, 대전): 자체 기준에 따라 1개 기초지자체만 추천 - 광역 단위 참여 지역(세종, 제주): 참여 가능 학교의 50% 범위 내에서 참여 학교를 정하여 추천 ※ 예시: 세종, 대상 학교 총 19교 → 최대 9교(47%)까지 추천 가능 	

※ 지역별 읍·면·특수지역 소재 초등학교 명단 및 추천 가능 기초지자체 수 [☞ <참고1>](#)

- (최종 심사) 교육부가 관련 분야(교육, 지방행정 등)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 권역별 지원 대상 기초지자체(권소사업) 선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운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 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확정

※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초지자체 중에서 권역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60점 이상 여부 판단 시에는 가점 제외), 권역별 평가 점수 분포의 격차가 과도하게 큰 경우 등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및 운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권역별 선정 기초지자체 수 일부 조정 가능**



- 추진 일정 : 공모 계획 안내(4.22.) → 지역별 과제 발굴 및 교육부 제출(~5.13.)*
 → 중앙 단위 평가(5월3주) → 최종 선정·발표(5월3주)

* 5.13.까지 신청·제출(기초 단위) 및 1차 심사(광역 단위) 거치되, 세부 일정은 지역별로 자체 마련

4. 선정평가 기준

심사 영역		심사 지표	배점(점)
정량평가 (60)	1. 돌봄·교육 참여율(25)	1-1. 기초지자체 단위 참여 학교 합산 학생 참여율: 지역 학생·학부모의 돌봄·교육 수요와 사업 참여 학교들의 돌봄·교육 운영 적극성 평가	20
		1-2. 참여 가능 학교 대비 참여 학교 수: 지역 내 학교들의 사업 참여 적극성 평가	5
	2. 지역협의체 활성화 (20)	2-1. 기초 단위 협의체 개최 실적: 지역사회와 학교가 돌봄·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정도를 평가	10
		2-2. 현장 협의체 구성률: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 등이 협력하여 학생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	5
		2-3. 지역 협의체에서 사업 관련 추가 지원 검토 여부: 사업과 관련한 특교 사업비 외 지역 단위 추가 지원 제공 논의·구체화 여부 평가	5
	3. 교육청 및 지자체 자체 지원(15)	3-1. 교육청 예산 확보 노력도: 돌봄·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을 평가	10
		3-2. 지자체 등의 추가 예산 지원 규모: 지자체가 돌봄·교육 관련 예산·현물 등을 지원하는 정도를 평가	5
정성평가 (40)	1. 모델의 적정성: 지역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15	
	2. 모델의 독창성: 기존 사업 등을 통해서 시도하지 못했던 특색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5	
	3. 모델의 실현 가능성: 사업비 범위, 현행 법·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	10	
	4. 모델의 지속·확산 가능성: '27년 이후 지원을 이어나갈 방안이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	10	
총점			100
가점 영역	인구감소지역(5점) 및 관심지역(3점) 기초지자체		5(3)

※ 세종·제주는 기초지자체 단위 실적 대신 광역지자체 단위 실적으로 평가

5. 지원 내용

- 선정된 기초지자체(권소시업)에서 제시한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모델의 구체화 및 시범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p><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모델(예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인력의 자원을 함께 활용한 방학 중 특색 프로그램^시 등 다양한 분야 운영, 지역사회 체험 활동 및 예체능 동아리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단기 캠프 형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이동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 등 지원 - 추가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학교의 방학 중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시간 확대(예시: 기존에는 오후에만 운영 → 사업을 통해 오전·오후에 운영)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등 부대 서비스 제공
--

※ 교육지원청 직접 수행, 교육지원청-시·군·구청 합동 사업단 운영, 학교 교부 등 모델 운영에 적합한 집행 방식 선택 가능하며, 학생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편성·집행 권장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라 해외 연수비, 홍보비 등으로 편성·집행은 지양)

- '26년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하며, '27년 이후에는 시범 운영의 성과 등을 지역·학교가 분석·평가하여 자체적으로 모델 운영

6. 사업 제재 관련 사항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이를 확인한 때에는 선정 취소 가능

7. 신청 방법

○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 각 시·도청 또는 교육청은 관내 시·군·구청 및 교육지원청에 지역별 서류 접수일(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접수처(시·도청 또는 교육청)을 안내
- 시·군·구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지역별로 공지된 접수일까지 아래의 제출자료 1, 2를 작성하고 기초 단위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심의를 거쳐 시·도청 또는 교육청에 공문으로 제출
- 각 시·도청 또는 교육청은 신청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광역 단위 초등돌봄·교육협의체 1차 심사를 실시하여 추천할 기초지자체를 결정하고, 추천할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제출자료 1, 2와 자체 작성한 제출자료 3을 본 공고문에 공지된 접수일(2026.5.13.)까지 교육부에 공문으로 제출(기한 엄수)

구분	제출 내용
제출자료	1. 과제 신청 제안서 ※ [서식1] 참고
	2. 우수모델(과제) 운영 계획서(증빙자료, 요약서 포함) ※ [서식2~4] 참고
	3. 시·도별 추천지역 명단 ※ [서식5] 참고
제출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제출기한	'26. 4. 22.(수) ~ 5. 13.(수) 18:00까지

8. 관련 문의

-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 044-203-6604, 6606, 6533)

[붙임] 1. 자료 제출 서식1~5 각 1부.

2. '26.3월 기준 읍·면·특수지역 소재 초등학교 명단 1부.

3. 인구감소(관심)지역 고시 현황 1부. 끝.

『2026년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 과제 제안신청서

구분	권역	컨소시엄 구성	① 00시·군·구, 00교육지원청 ② 00초등학교 외 0교
시·군·구청 총괄 책임자	소속/직위	○○시·군·구 ○○과(팀) / 직위명	
	성명	전화/이동전화	
		E-mail	
교육지원청 총괄 책임자	소속/직위	○○교육지원청 ○○과(팀) / 직위명	
	성명	전화/이동전화	
		E-mail	
시·군·구청 실무자	소속/직위	○○시·군·구 ○○과(팀) / 직위명	
	성명	전화/이동전화	
		E-mail	
교육지원청 실무자	소속/직위	○○교육지원청 ○○과(팀) / 직위명	
	성명	전화/이동전화	
		E-mail	

참여학교 리스트

연번	참여학교명	학교소재지	학교 연락처

2026년 5월 일
교육부 장관 귀하

【작성방법】

- 1) "권역"은 학교 소재지의 지역을 기준으로 아래 권역 분류로 기재
(수도·강원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충청권)
- 2) "컨소시엄 구성"란은 실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시·군·구청, 교육지원청, 학교 수 기재
- 3) "시·군·구청, 교육지원청 총괄 책임자"는 각 기관별 담당 과장급 공무원 기재
- 4) "시·군·구청, 교육지원청 실무자"는 각 기관별 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주무관(장학사) 등 기재
※ 복수의 실무자를 기재해야 할 경우 별도 칸을 추가하여 작성
- 5)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리스트를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고, 연락처는 학교 대표 연락처 기재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과제 제안서
[기초지자체 단위로 작성]

[00시·군·구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과제 추진계획(5쪽 내외)]

I. 과제 개요 → **1페이지 이내**

- 과제명 :
- 참여 기초지자체 :
- 참여 교육(지원)청 :
- 대상 학교 및 학생 수

연번	참여학교명	분교여부 (분교만 "O"체크)	참여학년	학생 수	현장협의체 구성여부(O/X)
예시	00초등학교	X			
	00초등학교분교장	O			
	00초등학교 (aa분교장 포함)	X			

※ 분교의 소재지가 본교 소재지와 다를 경우(본교가 읍·면·특수지에 소재하지 않고, '동'지역 또는 타 기초지자체에 소재)에는 독립된 1교로 본다.(예시 참고)

- 과제 추진 소요예산(교육부/지자체/교육청/기타) : 총 000천원
- 예산 재원별 과제 소요액(단위 : 천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자체	교육청 (학교포함)	기타*	계
	※ 시도비, 시군구비 구분			

* 구체적인 기관명 작성

II. 과제 추진방향 → **1페이지 이내**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단위에서의 문제 분석. 필요성 중심으로 작성

- (예시) 지역의 방학 중 교육격차 현황

○ (예시) 지역 여건 및 학생·학부모 방학 중 수요 분석

2. 과제 목표

○ 정량 목표(참여율 등), 정성 목표(만족도 등)

○ 과제별 투입 후 성과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

3. 추진 전략

○ 지역 협의체 기반 운영

○ 지역사회-학교 간 협력 모델 구축

Ⅲ. 과제 추진체계 → 1페이지 이내

1. 거버넌스 구성

○ 기초단위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시·군·구청-교육지원청), 학교단위 현장협의체(학교-지역주민센터, 돌봄기관 등) 구성 현황 제시

2. 역할 분담

○ 시·군·구청, 교육지원청, 학교 역할 제시(표 활용 가능)

Ⅳ. 과제 추진내용 → 최소 2페이지 이상

※ 적절성·독창성·실현가능성·지속성을 고려하여 세부 사업 추진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1.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계획

○ 지역돌봄기관과의 시간대별·대상별·기관 자체 특색프로그램별 방학 중 연계 돌봄·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부대서비스(방학 중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 무상 급·간식 제공 등)

2. 지역 특화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지역연계 특색프로그램 신규발굴·제공 등)

○

3. 운영 일정

○

○

V. 재정투자 계획 → 1페이지 이내(VI. 기대효과 포함)

○ 예산 구성(과제 1페이지 예산표 활용)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자체	교육청 (학교포함)	기타*	계
	※ 시도비, 시군구비 구분			

○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

- (확보 계획) 특별교부금 외 추가경정예산, 지자체 기금 활용

- (집행 계획) 총괄적인 집행계획으로 2~3줄(표 활용 가능)

연번	투자 영역	투자액(계획, 천원)	전체 투자액 대비 비중
1	방학 중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 급식 제공		
2	지역돌봄기관 연계 특색프로그램 신규 운영		
3	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등) 위탁 교육프로그램 추진		
		
계	00개		

VI. 기대효과

○ 교육격차 해소, 지역 협력 강화

○

증빙자료 목차

I. 과제 개요

[증빙 00] 참여학교 현황(현장협의체 구성여부 포함)

II. 과제 추진방향

[증빙 00] 필요 시

III. 과제 추진체계

[증빙 00] 광역기초단위 초등돌봄 교육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또는 상응하는 증빙

[증빙 00] 기초단위 초등돌봄 교육 협의체 개최 실적

[증빙 00] 참여학교별 현장협의체 구성 현황

IV. 과제 추진내용

[증빙 00] 00교육(지원)청 본예산서(추경예산)교육청 예산서 발취

V. 재정투자 계획

[증빙 00] 00교육(지원)청 본예산서(추경예산) 발취

[증빙 00] 00시·군·구 본예산서(추경예산) 발취 또는 지원계획(안) 등 증빙

[증빙 00] 00기관 예산 지원(투자) 계획 등 증빙

※ 그 외 필요 증빙 추가 가능

병학 중 소외지역 방과후교육 우수모델 선정·평가 증빙자료 양식
- [지표②] 지역 협의체 활성화 정도 -

2-① 기초협의체 개최 실적(10점) 증빙자료

- ▶ **지표 설명:** 지역별 초등돌봄·교육협의체 개최 실적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돌봄·교육을 위해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
- ▶ **산식:** '25.3.1.~'26.5.13.간 기초 협의체 개최 횟수 × 1점
- ※ **유의 사항**
 - 기초 협의체 개최 횟수가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만점(10점) 처리
 - 기초지자체가 없는 세종·제주는 동일 기간 동안의 광역 협의체 개최 횟수로 대체하여 계산

① (개최 현황 총괄) '기초지자체' 단위를 기준으로 실적 기간 중 기초협의체 개최 일시와 논의 안건 등 운영 실적 총괄 현황 작성

순	개최 일시	안건	비고
1	'00.00.00.	돌봄·교육 초과수요 분산을 위한 지역 내 공간 활용 방안 등	
2			
3			
⋮			

② (세부 운영 실적) 개최 실적별로 개최 일시, 논의 안건 및 주요 내용 등 세부 실적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공문, 사진 등) 첨부

순	개최 일시	안건	비고
00	'00.00.00.	돌봄·교육 초과수요 분산을 위한 지역 내 공간 활용 방안 등	
주요 논의내용	▶ 초과수요 발생 학교별 활용 가능한 지자체 공간 현황 자료 공유 ▶ 방과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주관 예술체육 프로그램 등 활용 방안 논의 ⋮		
증빙자료	협의회 개최 공문, 사진 등 개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사진 제출 시 대면 또는 온라인 회의 화면 캡처 자료 등 활용 (개최 일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①과 ②의 순번 번호를 일치시키고, 세부 운영 실적별로 증빙자료를 구분하여 제출

□ 2-② 현장협의체 구성률(5점) 증빙자료

- ▶ 지표 설명: 학교와 지역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성하였는지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돌봄·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 산식: (참여 학교 중 현장 협의체를 구성한 학교 수 / 참여 학교 수) × 5점
- ※ 유의 사항
 - 회의체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실적도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학교와 지역 기관이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협력 중인 경우도 실적 인정(평가위원회 판단)
 - 참여 학교 중 분교장이 있는 경우, 본교 또는 분교장 중 1곳만 현장 협의체를 구성해도 실적으로 인정

① (구성 현황 총괄) 학교-지역돌봄기관 등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현장 협의체 구성 비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별 구성 여부와 협의체명 제출

순	참여 학교(전체)	현장 협의체 구성 여부	협의체명	비고
1	○○초	○	□□협의체	
2	◇◇초	○	♀♀협의체	
3	◎◎초	×	-	
⋮				

② (세부 운영 실적) 협의체 개최 일시, 안건 및 주요 내용 등 세부 실적을 작성하고, 증빙자료(공문, 사진 등) 첨부(※ 단순 구성은 실적 미인정)

순	개최 일시	안건	비고
00	'00.00.00.	○○초 돌봄 초과수요 분산을 위한 공간 연계 방안	
주요 논의내용	▶ ○○초 학구 내 지역돌봄기관 위치 및 참여 가능 학년 등 기초 현황 ▶ ○○초 인근 지역돌봄기관 활용 초등돌봄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등 ⋮		
증빙자료	협의회 개최 공문, 사진 등 개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사진 제출 시 대면 또는 온라인 회의 화면 캡처 자료 등 활용 (개최 일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①과 ②의 순번 번호를 일치시키고, 회의체 형태의 회의 개최 실적도 인정하나, 회의 개최 실적이 없이 단순히 구성만 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 불가

□ 2-③ 지역협의체에서 사업 관련 추가 지원 논의 여부(5점 증빙자료)

- ▶ **지표 설명:** 광역 또는 기초 협의체에서 사업 참여 기초지자체에게 특별교부금 사업비 외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광역·기초지자체의 지원 의지 확인
- ▶ **산식:** 광역 또는 기초 협의체에서 참여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①안건으로 논의한 경우 3점 ②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경우 추가 1점 ③'26년 여름방학부터 즉시 지원 개시하는 경우 추가 1점 부여
- ※ **유의 사항**
 - 광역 협의체에서 안건으로 논의한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전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아닌 참여 기초지자체를 특정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평가위원회 판단)
 - 지원 방안이 구체적인지 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① (추가 지원 논의 현황 총괄) 광역 또는 기초협의체에서 사업 참여 기초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 총괄 현황 제출

순	광역 또는 기초 협의체	지원 대상 기초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논의 안건 및 지원 현황	비고
1	□□협의체	○○시(군)	① 안건 논의 실적(00건) - 안건명 ② 지원방안 마련 실적(00건) - 안건명 ③ '26년 여름방학 지원 계획(00건) - 안건명	
2	◇◇협의체	◎◎시(군)	"	
⋮				

② (세부 운영 실적) 기초지자체 대상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 세부 실적(안건 논의, 지원방안 마련, '26년 여름방학 지원)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순	개최 일시	안건	비고
00	'00.00.00.	○○시(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방안	
주요 논의내용	① 안건 논의 실적(00건) - 논의내용 ② 지원방안 마련 실적(00건) - 안건명 ③ '26년 여름방학 지원 계획(00건) - 안건명		
증빙자료	광역·기초 협의체에서 기초지자체 대상 지원을 위해 논의한 안건, 구체적인 지원 방안, '26년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문, 협약서, 회의록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①과 ②의 순번 번호를 일치시키고, 세부 운영 실적별로 증빙자료를 구분하여 제출

□ 3-② 지자체 등의 기타 추가 지원 규모(5점) 증빙자료

- ▶ **지표 설명:** 기초지자체, 지역 내 기관·단체가 정규수업 외 돌봄 교육을 위해 예산·현물 등을 지원하는 정도를 통해 운동네 초등돌봄 교육에 대한 지자체, 지역사회의 관심 및 지원 정도를 확인
- ▶ **산식:** 기초지자체의 관련 예산 편성 실적(예산서 등), 지역기관의 지원 실적(보도자료, 지원계획 등)을 확인 후 구간별 척도 점수 부여
- ※ **유의 사항**
 - 지역 내 희망하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운영 중인 경우 5점,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운영 중인 경우 3점, 그 외 1점 부여(평가위원회 판단)
 - 교육발전특구 참여 시·군·구의 경우, 해당 예산 중 돌봄·교육 활성화를 위해 투입한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빙(예산서, 계획)이 있는 경우 실적 인정(평가위원회 판단)
 - 지역 돌봄기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상비, 인건비, 시설 구축비 예산은 실적 판단 시 제외

① (예산 등 지원 내역) 기초지자체, 지역 내 기관·단체가 정규수업 외 돌봄·교육을 위해 예산·현물 등을 지원한 총괄 현황 제출

순	기초지자체명	지원액(량)	세부 지원현황	비고
1	00시(군)	80,000천원	① 00시(군) 소재 지역돌봄기관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 50,000천원(10개 지역아동센터 x 5,000천원) ② 방학 중 방과후 참여학생 행복도시락 지원 - 30,000천원(10교 x 3,000천원)	
2	00협회		"	
⋮				

② (세부 지원 실적) 기초지자체, 지역 내 기관·단체가 정규수업 외 돌봄·교육을 위해 예산·현물 등 지원 세부 실적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순	지원 시기	지원 내역(1줄)	지원액(량)
00	'00.00.00.	00시(군) 소재 지역돌봄기관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000원
주요 지원내용	▶ 00읍 소재 지역아동센터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 대상 행복도시락 지원 ⋮		
증빙자료	1) 기초지자체에서 정규수업 외 돌봄·교육 지원을 위해 시행한 <u>공문, 보도자료, 예산서, 지원(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일체</u> 2) 지역 기관·단체에서 정규수업 외 돌봄·교육 지원을 위해 시행한 <u>공문, 보도자료, 지원(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일체</u>		

※ ①과 ②의 순번 번호를 일치시키고, 세부 운영 실적별로 증빙자료를 구분하여 제출

확 약 서

○ 공모명 : 2026년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 과제 공모

위 사업 공모에 참여한 당 기관은 이번 공모과제와 관련된 모든 방침 및 운영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공모와 관련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허위 기재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에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 과정에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제반 유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초지자체	[기관명]	[담당부서명]	(기관 직인)
교육지원청	[기관명]	[담당부서명]	(기관 직인)

서식5

00시·도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추천지역 명단

연 번 (가나다순)	권 역	컨소시엄명	참여학교 수
(예시)1	수도·강원	00군-00교육지원청	10
2	영남	00시-00교육지원청	15
3	호남·제주	00특별자치도-00교육청	15
4	충청	00특별자치시-00교육청	10

00지역 초등돌봄·교육 협의체 의결("26.00.00.)을 거쳐 위와 같이 00시·도의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추천 지역 명단을 제출합니다.

광역지자체명
(기관직인)

시도교육청명
(기관직인)

참고1

'26.3월 기준 읍·면·특수지역 소재 초등학교 명단

< 광역지자체별 추천 가능 기초지자체 수 상한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읍·면·특수지역 초등학교가 있는 기초지자체 수	-	1	2	2	-	1	1	1	15	16	11	15	13	21	22	18	1
추천 가능 기초지자체 수	1	1	2	2	1	1	1	1 (광역)	7	8	5	7	6	10	11	9	1 (광역)
비고	10교 제한				10교 제한	10교 제한		9교 제한									31교 제한

< '26.3월 읍·면·특수지역 소재 초등학교: 2,425교(본교가 동 지역에 있는 분교장 8교 포함 시 2,433교) >

교육청	기초지자체	읍·면·특수지역 소재 초등학교명
부산	기장군(22)	가동초, 교리초, 기장초, 내리초, 달산초, 대청초, 모전초, 방곡초, 신정초, 신진초, 용암초, 월내초, 월평초, 일광초, 장안초, 정관초, 정원초, 좌천초, 죽성초, 철마초, 칠암초, 해빛초
대구	군위군(2)	대구군위초, 대구부계초(고매캠퍼스, 의흥캠퍼스 포함)
	달성군(33)	대구가창초, 대구강림초, 대구구지초, 대구금계초, 대구금포초, 대구남동초, 대구논공초, 대구다사초, 대구대실초, 대구도림초, 대구동곡초, 대구매곡초, 대구명곡초, 대구반송초, 대구북동초, 대구비슬초, 대구서동초, 대구서재초, 대구세천초, 대구세현초, 대구옥포초, 대구왕선초, 대구용계초, 대구유가초, 대구죽곡초, 대구천내초, 대구테크노초, 대구포산초, 대구하빈초, 대구현풍초, 대구화남초, 대구화동초, 대구화원초
인천	강화군(20)	강화초, 합일초, 갑룡초, 대월초, 선원초, 불은초, 삼성초, 길상초, 화도초, 양도초, 조산초, 내가초, 하점초, 명신초, 양사초, 송해초, 교동초, 삼산초, 해명초, 서도초
	옹진군(6+3)	연평초, 백령초, 북포초, 대청초, 덕적초, 영흥초, 인천남부초이작분교장(본교가 동 지역에 위치), 인천용현남초지월분교장(본교가 동 지역에 위치), 인천공항초신도분교장(본교가 동 지역에 위치)
대전	유성구(1)	남선초
울산	울주군(32)	구영초, 굴화초, 덕신초, 두동초, 두서초, 명산초, 무거초, 문수초, 반곡초, 반천초, 방기초, 범서초, 삼남초, 삼동초, 삼정초, 삼평초, 상북초(소호분교장 포함), 서사초, 서생초, 성동초, 언양초, 영화초, 온남초, 온산초, 온양초, 울주명지초, 웅촌초, 중남초, 척과초, 천상초, 청량초, 호연초
세종	- (19)	조치원대동초, 조치원명동초, 조치원고동초, 조치원신봉초, 연동초, 세종도원초, 연서초, 쌍류초, 연봉초, 연남초, 수왕초, 금남초, 감성초, 전의초, 소정초, 전동초, 장기초, 의량초, 부강초
경기	가평군(13)	가평초, 가평마장초, 대성초, 목동초, 미원초(위곡분교장, 장락분교장 포함), 방일초, 상면초, 상색초, 상천초, 연하초, 울길초, 조종초, 청평초
	광주시(15)	곤지암초, 광주도평초, 광지원초, 남한산초, 도곡초, 도궁초, 도수초, 도척초, 만선초, 번천초, 분원초, 삼리초, 선동초, 쌍동초, 초월초
	김포시(21)	개곡초, 고촌초, 금란초, 금성초, 김포대명초, 대곶초, 마송중앙초, 마송초, 보름초, 서암초, 석정초, 수남초, 신곡초, 신양초, 양곡초, 용정초, 월곶초, 통진초, 하성초, 학운초, 향산초
	남양주시(41)	가곡초, 가양초, 광릉초, 금남초, 남양주도곡초, 남양주송라초, 남양주송촌초, 남양주양지초, 남양주월문초, 남양주월산초, 답내초, 덕소초, 도심초, 도제원초, 마석초, 별내초, 부평초, 사능초, 수동초(송천분교장 포함), 양오초, 여람초, 예봉초, 오남초, 와부초, 용신초, 은술초, 장승초, 장현초, 조안초, 주곡초, 진건초, 진접초, 차산초, 창현초, 천마초, 퇴계원초, 풍양초, 해밀초, 화도초, 화봉초, 심석초
	안성시(29)	개산초, 개정초, 고삼초, 공도초, 광덕초, 광선초, 금광초(조령분교장 포함), 대덕초, 동신초, 마전초, 만정초, 명덕초, 문기초, 미곡초, 미양초, 보개초, 보체초, 산평초, 삼죽초, 서운초, 양성초, 양진초, 어울초, 용머리초, 원곡초, 일죽초, 죽산초, 죽화초, 현매초

교육청	기초지자체	읍면 특수지역 소재 초등학교명
충청	양주시(14)	가남초, 남면초(양덕분교장 포함), 덕도초, 봉암초, 삼상초, 상수초, 상패초, 송추초, 신지초, 양주백석초, 연곡초, 은봉초, 은현초, 효촌초
	양평군(22)	강상초, 강하초, 개군초, 곡수초, 다문초, 대야초, 서종초, 세월초, 수입초, 양동초(고송분교장 포함), 양서초, 양수초, 양평단월초, 양평동초, 양평초, 옥천초, 용문초, 원덕초, 정배초, 조현초, 지평초, 청운초
	여주시(17)	가남초, 강천초, 금당초, 능북초, 능서초, 대신초, 매류초, 문장초, 북내초(도전분교장 포함), 상포초, 송삼초, 송촌초, 오산초, 이포초, 점동초, 천남초, 흥천초
	연천군(13)	연천초, 상리초, 전곡초, 은대초, 군남초, 화진초, 궁평초, 백이초, 초성초, 백학초, 연천노곡초, 연천왕산초, 대광초
	용인시(23)	남곡초, 남사초, 남촌초, 능원초, 도현초, 두창초, 둔전제일초, 모현초, 백봉초, 백암초(수정분교장 포함), 송전초, 양지초, 왕산초, 용인둔전초, 용인이동초, 용천초, 원삼초, 장평초, 제일초, 좌향초, 처인초, 포곡초, 한터초
	이천시(23)	나래초, 대서초, 대월초, 도암초, 도지초, 마장초, 백사초, 부발초, 설성초, 송곡초, 신둔초, 신하초, 아미초, 울면초, 이천가산초, 이천매곡초, 이천사동초, 이항초, 장천초, 장호원초, 진가초, 표교초, 호법초
	파주시(31)	갈현초, 군내초, 능안초, 대성동초, 덕암초, 도마산초, 마정초, 마지초, 문산동초, 문산초, 봉일천초, 삼성초, 신산초, 연풍초, 영도초, 용미초, 용연초, 웅담초, 월릉초, 임진초, 자유초, 장파초, 적서초, 적암초, 천현초, 탄현초, 통일초, 파양초, 파주대원초, 파주초, 파평초
	평택시(27)	가사초, 갈곶초, 계성초, 내기초, 부용초, 삼덕초, 서탄초(내수분교장 포함), 안중초, 어연초, 오성초, 원정초, 진위초(산대분교장 포함), 창신초, 청북초, 청옥초, 팽성초, 평택도곡초, 평택송화초, 평택안일초, 평택연화초, 평택청아초, 평택회양초, 현덕초(광덕분교장 포함), 현일초, 현희초, 흥원초, 효덕초
	포천시(25)	가산초, 관인초, 내촌초, 도평초, 송우초, 신봉초, 신북초, 영북초, 왕방초, 외북초, 운담초, 유암초, 이곡초, 이동초, 일동초, 정교초, 지현초, 창수초, 청성초, 추산초, 축석초, 태봉초, 포담초, 포천노곡초, 화현초
	화성시(51)	갈담초, 갈천초, 고정초, 남양초, 내리숲초, 노진초, 대양초, 도이초, 동양초, 동화초, 마도초, 마산초, 발안초, 봉담초, 비봉초, 사창초, 상봉초, 상신초, 새동초, 서봉초, 서신초, 석천초, 송리초, 송산초, 수기초, 수영초, 수현초, 신남초, 양감초, 와우초, 우정초, 장명초, 정남초, 정림초, 제암초, 청룡초, 청연초, 청원초, 팔탄초(대방분교장 포함), 하길초, 한울초, 해운초, 행정초, 향남초, 화성매송초, 화성월문초, 화성장안초, 화성화수초, 화원초, 활초초, 효행초
강원	강릉시(16)	강동초, 구정초, 금광초, 사천초, 성산초, 송양초, 숲실초, 신영초, 신왕초, 연곡초, 옥계초(금진분교장 포함), 왕산초, 운양초, 정동초, 주문진초, 주영초
	고성군(13)	간성초, 거성초, 거진초, 공현진초, 광산초, 대진초, 도학초, 동광초, 아아진초, 오호초, 인흥초, 죽왕초, 천진초
	삼척시(12)	도계초, 장원초, 흥전초, 호산초, 임원초, 근덕초, 맹방초, 장호초, 미로초, 하장초, 오저초, 신동초
	양구군(10)	도촌초, 방산초, 비봉초, 양구초, 용하초, 원당초, 임당초, 죽리초, 한전초, 해안초
	양양군(13)	양양초, 조산초, 강현초, 회룡초, 상평초(공수전분교장, 오색분교장 포함), 한남초, 손양초, 송포초, 현북초, 광정초, 현성초, 인구초, 남애초
	영월군(13)	영월초, 봉래초, 내성초, 청령포초, 옥동초, 녹전초, 구래초, 마차초, 연당초, 쌍룡초, 신천초, 주천초, 무릉초
	원주시(24)	고산초, 교학초, 귀래초, 금대초, 동화초, 둔둔초, 만종초, 매지초, 문막초, 반계초, 부론초, 비두초, 산현초, 샘마루초, 서곡초, 섬강초, 소초초, 신림초, 신평초, 지정초, 호저초, 황둔초, 흥양초, 흥업초
	인제군(13)	귀둔초, 기린초(진동분교장 포함), 부평초, 상남초, 서화초, 어론초, 용대초, 원통초, 월학초, 인제남초, 인제초, 하남초, 한계초
	정선군(16)	갈래초, 고한초, 남선초, 남평초, 벽탄초, 백전초, 봉양초, 북평초, 사북초, 여량초, 예미초, 임계초, 정선초(가수분교장 포함), 증산초, 함백초, 화동초
	철원군(16)	근남초, 김화초, 내대초, 도창초, 동송초, 묘장초, 문혜초, 서면초, 신철원초, 오덕초, 외수초, 용정초, 장흥초, 철원초, 청양초, 토성초

교육청	기초지자체	읍면 특수지역 소재 초등학교명
	춘천시(18)	가산초, 광관초, 금병초, 금산초, 남산초, 당림초, 동내초, 만천초, 상천초, 서상초, 송화초, 오동초, 장학초, 조양초, 지촌초(지암분교장 포함), 천전초, 추곡초, 춘천삼육초
	태백시(12)	횡지초, 횡지중앙초, 태서초, 상장초, 함태초, 통리초, 태백초, 철암초, 장성초, 미동초, 동점초, 삼성초
	평창군(18)	평창초, 주진초, 미탄초, 방림초, 계촌초, 대화초, 안미초, 신리초, 장평초, 속사초, 봉평초, 면은초, 진부초, 거문초, 호명초, 대관령초, 횡계초, 도성초
	홍천군(24)	홍천초, 남산초, 석화초, 주봉초, 오안초, 화촌초, 삼포초, 구송초, 두촌초, 내촌초, 서석초, (청량분교장 포함), 삼생초, 속초초, 명덕초, 매산초, 협신초, 반곡초, 모곡초, 대곡초, 한서초, 화계초, 창촌초, 원당초, 울전초
	회천군(11)	회천초, 풍산초, 유촌초, 산양초, 상승초, 다목초, 용암초, 원천초, 사내초, 실내초, 광덕초
	횡성군(16)	횡성초, 성북초, 성남초, 창림초, 우천초, 정금초, 안흥초(덕천분교장 포함), 강림초, 둔내초, 갑천초, 청일초, 춘당초, 공근초, 수백초, 서원초, 유현초
충북	괴산군(14)	감물초, 괴산명덕초, 동인초, 목도초, 문광초, 백봉초, 보광초, 소수초, 송면초, 연풍초, 장연초, 청안초, 청천초, 칠성초
	단양군(10)	가곡초, 가평초, 단양초, 단천초, 대가초, 대강초, 매포초, 상진초, 어상천초, 영춘초(별방분교장 포함)
	보은군(13)	관기초, 내북초, 동광초, 보은삼산초, 세종초, 속리초, 수정초, 수한초, 종곡초, 탄부초, 판동초(송죽분교장 포함), 회남초, 회인초
	영동군(14)	영동초, 이수초, 부용초, 구룡초, 황간초, 추풍령초, 매곡초, 상촌초, 양강초, 용화초, 학산초, 양산초, 심천초, 초강초
	옥천군(12)	군남초, 군서초, 동이초(우산분교장 포함), 삼양초, 안남초, 안내초, 이원초, 장야초, 죽향초, 증약초, 청산초, 청성초
	음성군(20)	감곡초, 남신초, 대소초, 동성초, 맹동초, 무극초, 부윤초, 삼성초, 생극초, 소이초, 수봉초, 쌍봉초, 오갑초, 오선초, 용천초, 원남초, 원당초, 청룡초, 평곡초, 하당초
	제천시(10)	금성초, 백운초, 봉양초, 송학초, 수산초, 왕미초, 제천덕산초, 청풍초, 한송초, 화당초
	증평군(4)	도안초, 삼보초, 죽리초, 증평초
	진천군(15)	구정초, 금구초, 만승초, 문백초, 문상초, 백곡초, 성암초, 옥동초, 이월초, 진천삼수초, 진천상산초, 진천상신초, 초평초, 학성초, 한천초
	청주시(34+1)	가덕초, 각리초, 갈원초, 강내초, 남이초, 남일초, 낭성초, 내수초, 대길초, 동화초, 만수초, 문의초(도원분교장 포함), 미원초(금관분교장 포함), 북이초, 비봉초, 비상초, 상봉초, 생명초, 석성초, 솔강초, 수성초(구성분교장 포함), 신송초, 양청초, 오송솔미초, 오송초, 오창초, 옥산초, 옥포초, 창리초, 청원초, 청주수로초, 행정초, 현도초,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 용담초(현양원분교장(본교가 동 지역 위치))
충주시(19+1)	가흥초, 금가초, 노은초, 대미초, 덕신초, 동량초, 산척초, 세성초, 소태초, 수안보초, 수회초, 양성초, 엄정초, 오석초, 용원초(동락분교장 포함), 주덕초, 주덕회곡초, 충주대소원초, 충주중앙탑초, 달천초(매현분교장(본교가 동 지역 위치))	
충남	계룡시(4)	두마초, 엄사초, 신도초, 용남초
	공주시(19)	유구초, 구산초, 이인초, 탄천초, 계룡초, 경천초, 반포초, 학봉초, 의당초, 수촌초, 정안초, 석송초, 우성초, 귀산초, 상서초, 호계초, 마곡초, 신평초, 덕암초
	금산군(16)	군북초, 금산동초, 금산중앙초, 금산초, 금성초(금계분교장 포함), 남이초, 남일초, 복수초, 부리초, 상곡초, 성대초, 신대초, 용문초, 제원초, 진산초, 추부초
	논산시(26)	강경중앙초, 강경산양초, 강경황산초, 구자곡초, 연무초, 연무중앙초, 성동초, 원봉초, 광석초, 왕전초, 노성초, 상월초, 부적초, 감곡초, 연산초, 청동초, 백석초, 벌곡초, 도산초, 양촌초, 반곡초, 가야곡초, 은진초, 성덕초, 채운초, 이화초
당진시(25)	고대초, 고산초, 석문초, 삼봉초(난지분교장 포함), 초락초, 조금초, 정미초, 천의초, 면천초, 순성초, 북창초, 합덕초, 합도초, 신촌초, 우강초, 신평초, 서정초, 한정초, 송악초, 전대초, 기지초, 상록초, 송산초, 당산초, 유곡초	

교육청	기초지자체	읍면 특수지역 소재 초등학교명
	보령시(18+2)	개회초, 관창초, 광명초, 남포초, 대창초, 미산초, 성주초, 송학초, 오천초(삼시분교장 포함), 옥계초, 웅천초, 월전초, 주산초, 주포초, 천북초, 청라초, 청보초, 청소초, 청룡초장고분교장(본교가 동 지역에 위치), 청파초외연도분교장(본교가 동 지역에 위치)
	부여군(20)	부여초, 백제초, 공남초, 대왕초, 송간초, 규암초, 합송초, 백강초, 은산초, 외산초, 내산초, 구룡초, 홍산초, 옥산초, 양화초, 임천초, 장암초, 세도초, 석양초(석성분교장 포함), 초촌초
	서산시(18)	대산초, 명지초, 서산대진초, 인지초, 차동초, 부석초(간월도분교장 포함), 강당초, 가사초, 팔봉초, 부성초, 성연초, 음암초, 동암초, 운산초, 운신초, 해미초, 언암초, 고북초
	서천군(16)	장항초, 장항중앙초, 송림초, 서천초, 마동초, 송석초, 화양초, 기산초, 한산초, 마산초, 시초초, 오성초, 부내초, 비인초, 서면초, 서도초
	아산시(37)	거산초, 관대초, 금곡초, 금성초, 남창초, 도고오천초, 도고초, 동덕초, 둔포초, 모산초, 배방초, 산동초, 선장초, 송곡초, 송남초, 신창초, 신화초, 쌍룡초, 아산갈산초, 아산공수초, 아산남성초, 아산북수초, 아산세교초, 아산용연초, 아산천우물초, 연화초, 염작초, 염티초, 영인초, 오목초, 월랑초, 음봉초, 이순신초, 인주초, 탕정미래초, 탕정초, 한들물빛초
	예산군(24)	예산초, 금오초, 예산중앙초, 신례원초, 대술초, 신양초, 웅산초, 대흥초, 응봉초, 평촌초, 삽교초, 용동초, 보성초, 덕산초, 시량초, 수덕초, 봉산초, 고덕초, 구만초, 예덕초, 신암초, 조림초, 오가초, 양신초
	천안시(31)	풍세초, 용정초, 미죽초, 광덕초, 행정초, 보산원초, 목천초, 신계초, 도장초, 천안부영초, 신흥초, 위례초, 은석초, 성남초, 신사초, 수신초, 병천초, 천동초, 성환초, 성신초, 대흥초, 신가초, 신방초, 도하초, 직산초, 삼은초, 양당초, 성거초, 소망초, 입장초, 양대초
	청양군(11)	청양초, 청송초, 운곡초, 수정초, 정산초, 목면초, 청남초, 장평초, 남양초, 합천초, 가남초
	태안군(18)	태안초, 송암초, 화동초, 백화초, 안면초, 방포초, 안중초, 창기초, 고남초, 남면초, 삼성초, 근흥초, 소원초, 모항초, 시목초, 원북초, 대기초, 이원초(관동분교장 포함)
	홍성군(21)	홍성초, 홍주초, 홍남초, 광천초, 홍북초, 용봉초, 내포초, 한울초, 금마초, 배양초, 홍동초, 금당초, 장곡초, 은하초, 결성초, 서부초, 신당초, 갈산초, 구항초, 대정초, 서해삼육초
전북	고창군(20)	가평초, 고수초, 고창남초, 고창초, 공음초, 대산초, 대야초, 동호초, 매산초, 무장초, 봉암초, 고창부안초, 상하초, 성내초, 성송초, 신림초, 심원초, 아산초, 해리초, 흥덕초
	군산시(17)	발산초, 옥산초, 나포초, 개정초, 임피초, 오봉초, 창오초, 옥봉초, 대야초, 무녀도초, 당북초, 술산초, 서수초, 회현초, 성산초, 옥구초, 대야남초
	김제시(24)	공덕초, 광활초, 금구초, 금산초, 난산초, 남양초, 만경초, 백구초, 벽량초, 봉남초, 부용초, 성덕초, 용동초, 용지초, 원평초, 종정초, 죽산초, 진봉초, 청운초, 창하초, 초처초, 치문초, 황강초, 황산초
	남원시(18)	금지초, 남원대산초, 남원서원초, 대강초, 덕과초, 보절초, 사매초, 산내초, 산동초, 송동초, 수지초, 아영초, 오동초, 운봉초, 원천초, 이백초, 인월초, 주생초
	무주군(9)	괴목초, 무주초, 무주중앙초, 안성초, 적상초, 무풍초, 구천초, 설천초, 부남초
	부안군(18)	격포초, 곰소초, 동북초, 동진초, 백룡초, 백산초, 변산초, 부안남초, 부안동초, 부안초, 영전초, 우덕초, 위도초, 주산초, 줄포초, 창북초, 하서초, 행안초
	순창군(15)	구림초, 금과초, 동계초, 동산초, 복흥초, 순창중앙초, 순창초, 시산초, 쌍치초, 옥천초, 유등초, 인계초, 적성초, 팔덕초, 풍산초
	완주군(29)	가천초, 간중초, 구이초, 고산초, 남관초, 대덕초, 동상초, 동양초, 봉동초(양화분교장 포함), 봉서초, 봉성초, 비봉초, 삼례동초, 삼례중앙초, 삼례초, 삼우초, 상관초, 소양서초, 소양초, 송광초, 용봉초, 용진초, 운주초, 이서초, 이성초, 청명초, 청완초, 태봉초, 화산초
	익산시(29)	금마초, 성당초, 여산초, 영만초, 오산남초, 오산초, 왕궁초, 용산초, 춘포초, 함열초, 황등남초, 망성초, 석불초, 황등초, 성북초, 용북초, 낭산초, 다송초, 함라초, 왕북초, 흥왕초, 용성초, 응포초, 용안초, 용남초, 천서초, 미륵초, 삼기초, 왕궁남초
	임실군(14)	갈담초, 관촌초, 대리초, 덕치초, 마암초, 삼계초, 성수초, 신평초, 운암초, 오수초, 임실기림초, 임실초, 지사초, 청웅초
	장수군(8)	계남초, 계북초, 변암초(동화분교장 포함), 산서초, 수남초, 장계초, 장수초, 천천초
	정읍시(20)	감곡초, 고부초, 능교초, 대흥초, 덕천초, 백암초, 보성초, 북면초, 산외초, 소성초, 수곡초, 신태인초, 영원초, 용동초, 이평초, 입암초, 정남초, 정우초, 칠보초, 태인초

교육청	기초지자체	읍면 특수지역 소재 초등학교명
	진안군(13)	동향초, 마령초, 백운초, 부귀초, 송풍초, 안천초, 오천초, 외국초, 장승초, 조림초, 주천초, 진안중앙초, 진안초
전남	강진군(13)	강진중앙초, 강진동초, 군동초, 계산초, 칠량초, 대구초, 마량초, 도암초, 신전초, 성전초, 작천초, 병영초, 음천초
	고흥군(17)	고흥동초, 녹동초(소록도분교장 포함), 풍양초, 풍남초, 도덕초, 금산초, 도화초, 포두초, 봉래초, 백양초, 점암초, 영남초, 과역초, 남양초, 동강초, 대서초, 두원초
	곡성군(8)	곡성중앙초, 삼기초, 석곡초, 죽곡초, 고달초, 옥과초, 입면초, 오산초
	광양시(15)	광양서초, 광양동초, 광양북초, 광양마로초, 광양덕례초, 세풍초, 봉강초, 옥룡초, 옥룡북초, 옥곡초, 진상초, 진월초, 다압초, 광양용강초, 광양칠성초
	구례군(10)	구례중앙초, 구례북초, 문척초, 간문초, 토지초, 청천초, 광의초, 용방초, 원촌초, 중동초
	나주시(15)	세지초, 양산초, 왕곡초, 반남초, 공산초, 동강초, 다시초, 문평초, 노안초, 노안남초, 금천초, 산포초, 남평초, 다도초, 봉황초
	담양군(14)	담양동초, 담양남초, 담주초, 봉산초, 월산초, 금성초, 무정초, 용면초, 고서초, 창평초, 만덕초, 가사문학초, 수북초, 한재초
	무안군(20)	무안초, 일로초, 일로동초, 청계초, 청계남초, 청계북초, 삼향초, 삼향동초, 삼향북초, 몽탄초, 현경초, 현경북초, 망운초, 운남초, 해제초, 해제남초, 남악초, 오룡초, 무안행복초, 무안사랑초
	보성군(16)	보성초, 보성남초, 벌교초, 벌교중앙초, 낙성초, 노동초, 미력초, 검백초, 울어초, 복내초, 문덕초, 조성초, 조성남초, 득량남초, 예당초, 회천초
	순천시(17)	동명초, 팔마초, 해룡초, 동산초, 황전초, 월등초, 승주초, 주암초, 창촌초, 외서초(송광분교장 포함), 낙안초, 별량초, 상사초, 송산초, 매안초, 좌야초, 신대초
	신안군(19)	지도초, 증도초, 임지초, 임지남초, 자은초, 비금초, 비금동초, 도초초, 흑산초(홍도분교장, 흑산동분교장 포함), 가거도초, 하이초, 신의초, 장산초, 안좌초, 팔금초, 암태초, 압해초, 압해동초, 압해서초
	여수시(16+1)	경호초, 소라초(사곡분교장, 소라남분교장 포함), 관기초, 울촌초, 신평초, 나진초, 화양초, 안일초(백야분교장 포함), 돌산초(두라분교장 포함), 봉덕초, 백초초, 여남초, 화정초, 거문초, 동백초, 죽림초, 상암초(모도분교장(분교가 동 지역에 위치))
	영광군(13)	영광초, 영광중앙초, 백수초, 백수서초, 흥농초, 흥농서초, 대마초, 묘량중앙초, 불갑초, 군서초, 군남초, 염산초(낙월분교장 포함), 법성포초
	영암군(16)	영암초, 덕진초, 금정초, 신북초, 시종초, 도포초, 구림초, 장천초, 학산초, 독천초, 미암초, 서창초, 삼호중앙초, 용당초, 삼호서초, 대불초
	완도군(20)	완도초, 완도중앙초, 화흥초, 청해초, 군외초, 신지초, 신지동초, 고금초, 약산초, 금일초, 금일동초, 생영초, 금당초, 청산초(모도분교장 포함), 소안초, 노회초, 노회북초, 넓도초(서리분교장 포함), 보길초, 보길동초
	장성군(13)	장성중앙초, 장성성산초, 진원초, 진원동초, 분향초, 동화초, 삼서초, 사창초, 월평초, 서삼초, 북일초, 북이초, 약수초
	장흥군(14)	장흥초, 장흥서초, 장흥남초, 관산초, 관산남초, 대덕초, 안양초, 용산초, 회진초, 명덕초, 장동초, 장평초, 유치초, 부산초
	진도군(10)	진도초, 진도서초(가사도분교장 포함), 군내북초, 금성초, 고성초, 오산초, 의신초(접도분교장 포함), 석교초, 지산초, 조도초(거차분교장 포함)
	함평군(11)	함평초, 기산초, 손불초, 손불서초, 신광초, 학다리중앙초, 엄다초, 대동향교초, 나산초, 해보초, 월야초
	해남군(19)	해남동초, 해남서초, 삼산초, 화산초, 현산초, 송지초, 서정초, 송호초, 어란진초, 북평초, 북일초, 옥천초, 계곡초, 마산초(용전분교장 포함), 황산초, 산이초, 산이서초, 우수영초, 회원초
화순군(16)	화순초(이서분교장 포함), 화순만연초, 화순제일초, 화순오성초, 능주초, 도곡초, 도곡중앙초, 천태초, 춘양초, 이양초, 청풍초, 한천초, 동면초, 사평초, 동북초, 아산초	
경북	경산시(18)	하양초, 하주초, 청천초, 금락초, 자인초, 용성초, 진량초, 진성초, 다문초, 부림초, 봉황초, 경산압량초, 현흥초, 남산초, 와촌초, 계당초, 대동초, 남천초
	경주시(18)	감포초, 안강제일초, 안강초, 옥산초, 사방초, 산대초, 건천초, 천포초, 모량초, 입실초, 연안초, 모화초, 영지초, 석계초, 괴릉초, 양북초, 양남초, 나산초, 내남초, 의곡초, 아화초, 현곡초, 나원초, 금장초, 양동초, 강동초, 천북초, 모아초, 화천초

교육청	기초지자체	읍면 특수지역 소재 초등학교명	
경북	고령군(9)	고령초, 덕곡초, 운수초, 성산초, 박곡초, 다산초, 개진초, 우곡초, 쌍림초	
	구미시(17)	선산초, 무을초, 옥성초, 덕촌초, 도개초, 해평초, 산동초, 장천초, 고아초, 구운초, 남계초, 원호초, 문장초, 구미문성초, 구미인덕초, 구미신당초, 구미원당초	
	김천시(12)	아포초, 개령초, 개령서부초, 위량초, 아천초(능치분교장 포함), 봉계초, 직지초, 대룡초, 감천초, 조마초, 대덕초, 지품천초(증산분교장 포함)	
	문경시(13)	점촌북초, 신기초, 영순초, 산양초, 호계초, 산북초, 동로초, 문경초, 용흥초, 당포초, 동성초, 가은초, 농암초	
	봉화군(24)	동양초, 상운초, 서벽초, 재산초, 석포초, 내성초, 도촌초, 봉성초, 봉화초, 춘양초, 법전중앙초, 물야초, 명호초, 소천초	
	상주시(20)	사벌초, 중동초, 낙동초, 청리초, 옥산초, 외남초, 낙서초, 중모초, 모동초, 모서초, 화동초, 화령초, 화북초(입석분교장 포함), 외서초, 백원초, 은척초(무릉분교장 포함), 공검초, 함창초, 함창중앙초, 이안초	
	성주군(11)	성주초, 성주중앙초, 선남초, 도원초, 대동초, 수륜초, 가천초, 대가초, 벽진초, 초전초, 월항초(지방분교장 포함)	
	안동시(16)	풍산초, 풍북초, 서선초, 와룡초, 복후초, 서후초, 신성초, 일직초, 남후초, 남선초, 임하초, 길안초, 임동초, 월곡초, 녹전초(원천분교장 포함), 풍천풍서초	
	영덕군(9)	영덕야성초, 강구초, 남정초, 지품초, 축산향초, 영해초, 병곡초, 원황초, 창수초(인천분교장 포함)	
	영양군(6)	영양초, 영양중앙초, 입암초, 일월초(청기분교장 포함), 수비초, 석보초	
	영주시(11)	풍기초, 풍기북부초, 이산초, 평은초, 문수초, 장수초, 안정초, 봉현초, 순흥초, 옥대초, 부석초	
	영천시(13)	청통초, 신녕초, 화산초, 자천초(보현분교장 포함), 지곡초, 임고초, 평천초, 고경초, 단포초, 북안초, 대창초, 금호초, 거여초	
	예천군(12)	예천초, 예천동부초, 예천남부초, 용문초, 상리초, 은풍초, 감천초, 유천초, 용궁초, 지보초, 풍양초, 호명초	
	울릉군(4)	울릉초, 남양초, 천부초, 저동초	
	울진군(11)	울진초, 울진남부초, 평해초, 부구초(삼당분교장 포함), 삼근초, 노음초, 매화초, 기성초, 온정초, 죽변초, 후포초(후포동부분교장 포함)	
	의성군(14)	의성초, 의성남부초, 의성북부초, 단촌초, 점곡초, 옥전초, 춘산초, 금성초(가음분교장 포함), 도리원초, 안평초(신평분교장 포함), 비안초, 구천초, 안계초, 다인초	
	청도군(11)	청도초, 유천초, 청도중앙초, 화양초, 남성현초, 각남초, 풍각초, 덕산초, 이서초, 금천초, 동산초	
	청송군(8)	청송초, 이전초, 부남초, 도평초, 화목초, 안덕초, 파천초, 진보초	
	칠곡군(21)	왜관초, 왜관중앙초, 왜관동부초, 낙산초, 매원초, 신동초, 지천초, 동명초, 동명동부초, 가산초, 학림초, 다부초, 석적초, 장곡초, 대교초, 북삼초, 송산초, 인평초, 약목초, 관호초, 약동초	
	포항시(33)	구룡포초, 대보초, 달전초, 학천초, 흥해초, 흥해남산초, 흥해서부초, 초곡초, 죽천초, 곡강초, 신광초, 청하초, 월포초, 송라초, 기계초, 기북초, 죽장초, 연일초, 연일형산초, 유강초, 대송초, 남성초, 오천초, 구정초, 문충초, 문덕초, 포항원동초, 동해초, 장기초, 초서초, 포항용산초, 포항펜타초, 양포초	
	경남	거제시(17)	거제초, 기성초, 동부초(울포분교장 포함), 명사초, 사등초, 송정초, 송덕초, 연초초, 오랑초, 오비초, 외간초, 외포초, 일운초, 장목초, 창호초, 칠천초, 하청초
		거창군(17)	가북초, 가조초, 거창초, 고제초, 남상초, 남하초, 마리초, 북상초, 신원초, 아림초, 웅양초, 월천초, 위천초, 주상초, 창남초, 창동초, 셋별초
		고성군(17)	개천초, 거류초, 고성초, 구만초, 대성초, 대흥초, 동해초, 마암초, 방산초, 삼산초, 상리초, 영오초, 울천초, 철성초, 하이초, 하일초, 회화초
		김해시(18)	금동초, 금산초, 대감초, 대동초, 대진초, 생림초, 안명초, 용산초, 이북초, 이작초, 주촌초, 진례초, 진영금병초, 진영대창초, 진영대흥초, 진영장등초, 진영중앙초, 한림초
		남해군(13)	고현초, 남명초, 남해초, 도마초, 미조초, 삼동초, 상주초, 설천초, 성명초, 이동초, 지족초, 창선초, 해양초
		밀양시(17)	무안초, 부북초, 사포초, 산내남명초, 산내초, 산동초, 산외초, 삼랑진초, 상남초, 상동초, 송진초, 수산초, 송진초, 예림초, 청도초, 초동초, 태룡초

교육청	기초지자체	읍면 특수지역 소재 초등학교명
	사천시(11)	곤명초, 곤양초, 동성초, 사남초, 사천초, 삼성초, 서포초, 수양초, 용현초, 정동초, 축동초
	산청군(13)	금서초, 단계초, 단성초, 덕산초, 도산초, 산청초, 삼장초, 생비량초, 생초초, 신안초, 신천초, 오부초, 차항초
	양산시(23)	가남초, 가양초, 가촌초, 금오초, 동면초, 동산초, 물금초, 범어초, 상북초, 서남초, 석산초, 성산초, 소토초, 신주초, 영천초, 오봉초, 용연초, 원동초(이천분교장 포함), 좌삼초, 증산초, 하북초, 화제초, 황산초
	의령군(12)	가례초, 낙서초, 남산초, 대의초, 부림초(봉수분교장 포함), 용덕초, 유곡초, 의령초, 정곡초, 지정초, 칠곡초, 화정초
	진주시(17)	관봉초, 금곡초, 금산초, 금호초, 내동초, 대곡초, 명석초, 문산초, 미천초, 반성초, 사봉초, 수곡초, 예하초, 이반성초, 지수초, 진성초, 집현초
	창녕군(16)	계창초, 고암초, 길곡초, 남지초, 대지초, 대합초, 도천초, 동포초, 명덕초, 부곡초(학포분교장 포함), 영산초, 유어초, 이방초(장천분교장 포함), 장마초, 창녕성산초, 창녕초
	창원시(27)	감계초, 감천초, 광려초, 구산초(구서분교장 포함), 대산초, 무동초, 반동초, 봉강초, 북면초, 삼계초, 상일초, 신등초, 신방초, 안계초, 온천초, 우산초, 우암초, 일동초, 자여초, 전안초, 중리초, 진동초, 진전초, 하북초, 하천초, 호계초, 화양초
	통영시(11)	광도초, 도산초, 벽방초, 사랑초, 산양초(풍화분교장 포함), 욕지초(연화분교장 포함), 용남초, 원평초, 제석초, 죽림초, 한산초
	하동군(15)	갈육초, 고전초, 공항초, 노량초, 목계초(청암분교장 포함), 북천초, 쌍계초, 악양초, 옥종초, 적량초, 진교초, 진정초, 하동초, 화개초(왕성분교장 포함), 횡천초
	함안군(16)	가야초, 군북초, 대산초, 문암초, 법수초, 산인초, 아라초, 예곡초, 외암초, 월촌초, 유원초, 중앙초, 칠서초(이룡분교장 포함), 칠원초, 함안초, 호암초
	함양군(13)	금반초, 마천초, 백전초, 병곡초, 서상초, 서하초, 수동초, 안의초, 위림초, 위성초, 유림초, 지곡초, 함양초
	합천군(17)	가회초, 남정초, 대병초, 대양초, 묘산초, 봉산초, 삼가초, 쌍백초, 쌍책초, 야로초, 영전초, 용주초, 적중초, 청덕초, 초계초(덕곡분교장 포함), 합천가야초, 합천초
제주	(63)	가마초, 남원초, 대정서초, 대정초(가파분교장 포함), 덕수초, 동남초, 무릉초, 보성초, 사계초, 서광초, 성산초, 성읍초, 수산초, 시흥초, 신례초, 신산초, 안덕초, 온평초, 위미초, 의귀초, 창천초, 태흥초, 토산초, 표선초, 풍천초, 하례초, 한마음초, 흥산초, 고산초, 광금초, 광령초, 구엄초, 구좌중앙초, 귀덕초, 금악초, 김녕초(동북분교장 포함), 납읍초, 대흘초, 더덕초, 물메초, 북촌초, 선흘초, 세화초, 송당초, 수원초, 신창초, 신촌초, 애월초, 어도초, 우도초, 장전초, 재릉초, 저청초, 조천초(교래분교장 포함), 종달초, 추자초(신양분교장 포함), 평대초, 하귀일초, 하귀초, 하도초, 한동초, 한림초, 함덕초(선인분교장 포함)

◆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 - 15호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 - 78호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구분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부산광역시(2)	금정구, 중구
인천광역시(1)	동구
광주광역시(1)	동구
대전광역시(3)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도(2)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특별자치도(1)	익산시
경상북도(2)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2)	사천시, 통영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